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2013. 3

◆ 동 자료는 보도일시(3.29일 조건) 이후 대외 공개되는 자료이며,
보도일시 이전까지는 비공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목 차

I.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1
II. 그간의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경과	2
III. 제3차 재정계산 추진 체계	3
IV. 장기 재정전망 결과	4
1. 재정추계 모형 및 방법	4
2. 재정추계결과	5
3. 국민연금의 미래 모습	8
4. 재정추계결과 분석 및 평가	9
5. 인구와 국민연금 재정	11
V. 시사점	12

I.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 2013년은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
- 3월 재정추계 결과 발표,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 (목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
- (근거)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
 - * 제1차 재정계산은 2003년, 제2차 재정계산은 2008년에 실시
- (주요내용) 재정추계를 통한 재정전망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
 -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의 계산과 재정전망, 제도개선, 기금운용계획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포괄하는 과정

<법률>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 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I. 그간의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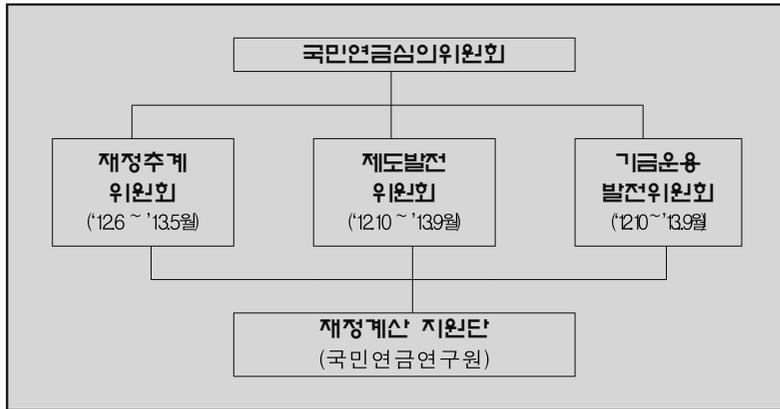
☞ 선진국에 비해 제도 운영 초기 2차례 연금 개혁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 1998년 제1차 제도개혁
 - 급여수준 하향조정(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70%→60%), 수급연령 상향조정(60→65세, '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
-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 당시의 보험료율(9%)과 급여수준(60%) 유지 시 2036년에 수지적자 발생, 2047년에 기금 소진
 - 2003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2003.10월) 하였으나, '국민연금 안티사태(국민연금 8대 비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무산
 - * (주요내용) 보험료율 15.9%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하
- 2007년 제2차 제도개혁
 - 급여율 인하*(60→40%)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07.7월) 및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 * 2008년 즉시 60→50%로 인하, 이후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에 40%에 도달
-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 2007년 제도개혁으로 2044년에 수지적자 발생, 적립금 보유기간은 2047년→2060년 13년 연장
 - 추가적인 재정안정화는 제3차 재정계산 시(2013년) 검토키로 함

Ⅲ. 제3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 (논의체계) 민간 전문가 중심의 논의체계 구축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추계와 제도 개선방안 논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객관성 제고**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운영



□ (추진일정)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 재정추계(장기재정전망) 실시 : 2012. 6월 ~ 2013. 3월
 - *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총 16차례 회의를 거쳐 검토
- 제도개선 논의 및 종합운영계획(안) 마련 : 2012. 10월 ~ 2013. 9월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2013. 9월
-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국회 제출 : 2013. 10월

Ⅳ. 장기 재정전망 결과

1 재정추계 모형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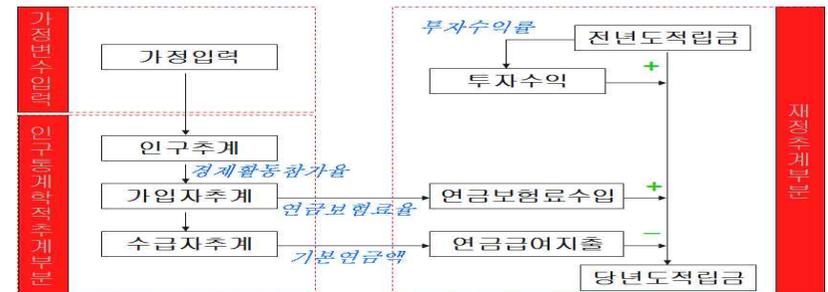
□ 추계모형의 개요 : 연금 수리적 모형(actuarial model)

- 가입자가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사망으로 연금수급을 마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연금제도 내용에 맞추어 구현
- 이를 통해 가입자, 보험료수입, 수급자, 급여지출 등을 계산하는 연금 수리적 모형(actuarial model) 사용

□ 추계모형의 구조

- (가정변수입력) 외생변수인 거시경제변수 및 제도 관련 변수 (보험료율, 급여조건, 소득수준 등)를 설정하여 입력
- (인구통계학적 추계) 인구전망을 토대로 경제활동참가율, 연금 가입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규모를 전망하며, 가입자 규모를 기준으로 수급조건에 따라 수급자 규모를 산출
- (재정추계) 연금보험료수입, 연금급여지출, 투자수익, 적립금 등 재정전망 결과를 산출

< 재정추계 흐름도 >



□ 추계 기간 : 향후 70년 (2013~2083년)

- 제도의 성숙 및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하여 7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제2차 재정계산의 추계기간(2008~2078)과 동일

□ 추계 결과 : 현행 제도 유지 시

- 2043년까지는 적립기금이 계속 증가(최대 적립금 2,561조원)
-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에 기금 소진

* 제2차 재정계산과 수지적자발생시점(2044) 및 적립금 보유기간(2060)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조금 커짐

< 재정전망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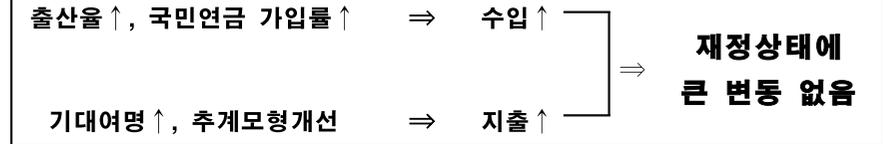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적립금 보유기간
제3차	2043년(2,561조원, 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	2044년	2060년(△281조원)
제2차	" (2,465조원, 2005년 불변가격 1,056조원)	"	" (△214조원)

* 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 수익) < 총지출(연금급여 지출 등)이 되는 시점

-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2013년 1%)

□ 가정 변수 : 제2차 재정계산과의 비교 설명

- ☞ 2008년(제2차 재정계산)에 비해 각 변수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
 - 인구변동, 제도변수(가입율 등) 변동은 긍정적 효과
 - 거시경제 변동, 모형 변동은 부정적 효과



*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는 통계청, KDI가 마련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통일된 기준 사용

- (인구변수) 출산율과 기대여명이 제2차 재정계산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며, 적립금보유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긍정적임
 - 출산의 증가, 국제이동의 순유입증가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 평균수명의 개선으로 급여지출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감소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상승>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83	
3차 재정계산	합계출산율(명)	1.23	1.35	1.41	1.42				
	기대수명 (세)	남	77.20	79.31	81.44	83.42	85.09	86.59	88.12
		여	84.07	85.67	86.98	88.21	89.28	90.30	92.00
2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합계출산율(명)	1.15	1.20	1.28					
	기대수명 (세)	남	76.1	78.0	79.8	81.4	82.9		
		여	82.9	84.7	86.3	87.7	88.9		

○ (거시경제변수) 임금상승률의 하락과 그보다 낮은 금리 추이로 인해 적립금보유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
 -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모두를 감소시키는 효과
- 낮은 금리는 적립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효과

○ (제도변수) 최근의 가입자 증가 추세를 반영, 2차 재정계산의 가입률* 가정을 현실화(상향 조정)하여, 추계 상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

* 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율

* 제2차 재정계산 당시 중장기 가입률 가정을 82.8%로 고정시켰으나, '11년 실제 가입률은 87.4%에 달하여,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15년 이후 가입률을 90.0%로 가정

< 국민연금 가입률의 증가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이후
제3차 재정계산	-	-	-	-	88.5%	89.2%	89.8%	90.0%
실제 가입률	84.2	85.0	86.0	87.4	-	-	-	-
제2차 재정계산	82.8%							

< 참고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과의 차이 >

▲ 추계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12) 비교

	수지적자 발생	최대 적립기금	적립금 보유기간
제3차 재정계산	2044년	2,561조원(2043년)	2060년
국회예산정책처	2041년	1,582조원(2040년)	2053년

▲ 전망결과 차이의 원인

- 모형에 따른 차이
 - 예산정책처는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범용 모형인 PROST를 변형 사용
 -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연구원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해 개발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사용
- 거시경제변수 전망에 따른 차이
 - 예산정책처에서는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미래 경제여건을 훨씬 비관적으로 전망

3

국민연금의 미래 모습

□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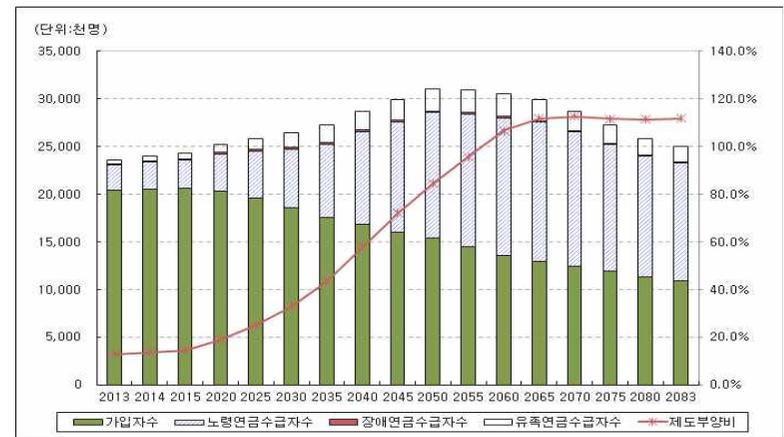
○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

-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78.6% 수준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 수급

○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



□ 재정목표 가정별 필요보험료율

- ☞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재정목표가 없음
- ☞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으로 재정목표가 필요
- ☞ 선진국 재정목표를 참고로 재정목표를 가정하여, 재정평가 실시
- ☞ 필요보험료율은 재정평가를 위한 지표이며, 실제 보험료 및 정책 방향과는 무관함

○ 추계기간 마지막 년도인 2083년을 기준으로 재정 평가

- 즉 2083년을 기준으로

- ① 적립배율* 2배(미국 OASDI, 일본 후생연금),
- ② 적립배율 5배,
- ③ 수지적자 미발생(일본 1994년 후생연금),
- ④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캐나다 CPP)** 등

4가지 재정목표를 임의로 가정하여,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 산정

* 적립배율이란 해당연도(2083년)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을 의미

** 일정기간(약 20년, 2063~2083)동안 적립배율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 유지

*** 필요보험료율이란, 각각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수준을 의미

○ 재정목표 가정별로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이 12 ~ 16%로 나타남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

구분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제3차 재정계산	12.91%	13.48%	14.11%	15.85%

□ 비용률*

* 적립기금 없이 매년의 보험료 수입만을 재원으로 운영(완전부과방식)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필요한 보험료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비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60년 이후 안정세
- 제2차 재정계산결과에 비해 2030~2080년 동안의 비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유사

〈연도별 비용률 추이〉

(단위 : %)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3
제3차	5.2	8.0	12.8	17.4	21.4	22.6	22.6	22.9
제2차	4.9	8.2	13.1	17.7	21.9	23.2	22.8	22.8

〈 참고 : 공적연금 재정방식의 개념과 특징 〉

-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
 - 원칙적으로 적립기금 없이 당해 연도에 필요한 급여재원을 당해 연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기여금이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
 - * 당해연도 연금급여 지출액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이나 세금수입 합계와 동일한 것이 원칙
 - 현 세대 노령층의 급여비용을 현 세대 근로계층이 부담하는 방식
 - * 공적연금의 역사가 오래 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초기 부분적립에서 이후 부과방식으로 전환
- 적립방식(funding system)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 완전적립 방식(full funding system)은 원칙적으로 세대간 소득이전 효과가 없는 구조
- 부분적립방식(partially-funded system) : 우리나라
 - 제도 도입 초기로 큰 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사이에 존재하는 재정방식으로 제도 시행 역사가 짧아 기금이 적립된 경우

□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

- 제도가 성숙하고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8년 112.9%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다소 감소
 - 제2차 재정계산 대비 제도부양비가 낮아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

< 연도별 제도부양비 추이 >

(단위 : %)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3
제3차 재정계산	19.1	33.0	57.9	84.6	106.6	112.9	111.9
제2차 재정계산	18.3	34.4	61.6	90.1	112.9	119.3	-

□ 출산율과 국민연금 재정

-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장기 출산율을 가정
 - *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상승 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합계출산율을 달리 가정할 경우 적립금보유기간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비용률은 크게 달라짐
 - 출산율의 증가는 가입자의 증가로 나타나 비용률을 낮추는 효과

- (인구 대안가정 1)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7명*에 도달, 이후 동일한 수준 유지 가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 제시된 정부목표 합계출산율

- (인구 대안가정 2) 합계출산율이 2020년까지 1.7명에 도달, 2035년에 2.1명(인구대체수준)에 도달, 이후 동일한 수준 유지 가정

<인구 대안가정에 따른 재정상태의 변화>

	수지적자	적립금 보유기간	비용률		
			2050년	2070년	2083년
기본가정	2044	2060	17.4%	22.6%	22.9%
대안가정 1	2045	2061	16.6%	19.5%	18.5%
대안가정 2	2045	2061	16.5%	17.3%	15.0%

V. 시사점

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

-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 보유
 -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
 - * 독일의 경우 유동성 차원에서 월급여 지출액의 12%(약 4일치) 정도 보유
-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보험료 수입이 필요한 급여 지출액을 초과하지만,
 - * 기금투자수익으로 인해 총수지는 2043년까지 흑자
 -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보험료 수지는 이미 적자이며, 매년 급여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료와 조세 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

< 국가별 GDP 대비 보험료 수입·급여지출액 비중 >

GDP 대비 비중(%)	우리나라		일본	스웨덴	미국	독일	캐나다
	2011	2031					
보험료 수입	2.2	2.630	5.8	6.4	4.6	6.6	2.8
급여지출액	0.8	2.635	9.8	7.2	6.0	10.7	4.2
보험료 수지	+	-	-	-	-	-	-

- 다만,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더불어,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할 필요

② 기금이 없다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

-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문제없이 연금급여 지급
 - 일반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없거나, 약간의 완충기금(Buffer Fund)만 보유한 '부과방식'으로 재정 운영
-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하였으나,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금은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
 -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제도 운영 초기 급여지출 대비 상당 수준의 적립기금 보유

* 적립배율 : 연초 적립금을 그 해의 급여액으로 나눈 비율

- * (스웨덴) 1960년 도입된 ATP의 초기 적립배율은 130배 수준(부분적립)
- * (캐나다) 제도초기 적립배율은 1966년 52.5배 → 1985년 5.7배
- * (일본) 1965년 29.2배 → 1985년 7.3배
- * (우리나라) 2012년 35.9배 → 2030년(보험료 수지적자) 18.4배 → 2043년(기금최대) 9.4배
- 이후 적립기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게 됨
- 선진국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의 감소·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음
-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이며,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재정)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됨
 - 기금이 소진이 곧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중단 내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

③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

- 어떠한 재정방식(부과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든지, 출산율이 높아져야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인구정책의 효과는 초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바,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추계 결과에서 보듯이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2060년까지 유지되는 기금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그러나 2050년대 이후 비용률이 크게 낮아져, 장기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출산율 제고로 지속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남

시나리오	출산율	적립기금 보유기간	2070년 비용률	2083년 비용률
기본가정	점차 증가하여 2040년 이후 1.42 유지	2060년	22.6%	22.9%
대안2*	2020년까지 1.7로 증가, 2035년까지 2.1로 증가 후, 2.1 유지	2061년	17.3%	15.0%

* 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경제활동 참가율을 미세하게 조정

-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참고1 재정수지 전망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71	109,098	54,073	55,025	33,923	33,487	75,175	22.8	9.00	621,361
2025	1,260,709	144,640	73,224	71,416	56,327	55,735	88,313	20.8	9.00	797,634
2030	1,732,381	186,913	95,041	91,872	89,953	89,176	96,960	18.2	9.00	963,104
2035	2,184,180	225,068	117,173	107,895	138,809	137,826	86,259	15.1	9.00	1,084,840
2040	2,494,494	258,427	141,595	116,832	213,773	212,563	44,654	11.5	9.00	1,119,973
2043	2,561,489	277,586	156,765	120,822	267,328	265,963	10,258	9.5	9.00	1,083,720
2044	2,558,741	283,749	162,747	121,003	286,498	285,076	-2,748	8.9	9.00	1,061,331
2045	2,541,358	289,420	168,889	120,531	306,804	305,324	-17,383	8.3	9.00	1,033,451
2050	2,200,519	309,781	203,282	106,498	414,088	412,288	-104,308	5.6	9.00	810,491
2055	1,334,483	300,993	231,040	69,953	525,383	523,193	-224,390	3.0	9.00	445,180
2060	-280,716	263,375	263,375	0	657,820	655,155	-394,445	0.2	9.00	-84,818

<GDP 대비 재정수지전망>

(단위 : %, 십억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GDP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31.1	3.9	2.4	1.5	1.1	1.0	2.8	1,344,421
2015	33.6	4.5	2.4	2.1	1.2	1.2	3.3	1,531,088
2020	39.3	5.1	2.5	2.6	1.6	1.6	3.5	2,155,210
2025	44.1	5.1	2.6	2.5	2.0	1.9	3.1	2,859,011
2030	47.8	5.2	2.6	2.5	2.5	2.5	2.7	3,624,205
2035	49.4	5.1	2.6	2.4	3.1	3.1	2.0	4,422,196
2040	47.4	4.9	2.7	2.2	4.1	4.0	0.8	5,257,143
2043	44.2	4.8	2.7	2.1	4.6	4.6	0.2	5,800,541
2044	42.7	4.7	2.7	2.0	4.8	4.8	0.0	5,989,862
2045	41.1	4.7	2.7	1.9	5.0	4.9	-0.3	6,182,966
2050	30.5	4.3	2.8	1.5	5.7	5.7	-1.4	7,215,394
2055	16.0	3.6	2.8	0.8	6.3	6.3	-2.7	8,361,023
2060	-2.9	2.7	2.7	0.0	6.9	6.8	-4.1	9,583,907

참고2 재정목표 가정에 따른 적립기금추이

<적립배율 목표에 따른 적립기금 추이>

(단위 : 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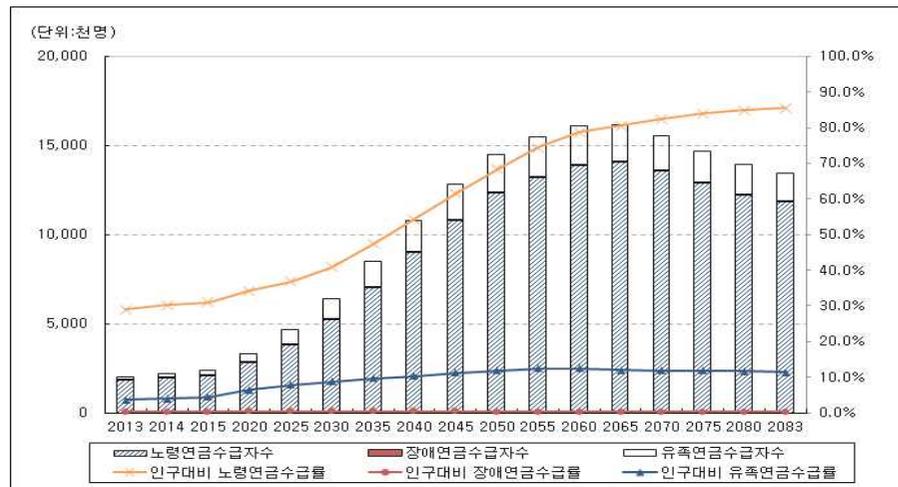
	재 정 목 표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적립 배율	적립 기금*	적립 배율	적립 기금	적립 배율	적립 기금	적립 배율	적립 기금
2013	26.10	31.1	26.10	31.1	26.10	31.1	26.10	31.1
2015	25.10	34.7	25.10	34.8	25.10	35.0	25.10	35.5
2020	25.10	45.9	25.50	46.8	25.80	47.9	26.80	50.8
2025	25.20	56.2	25.90	58.0	26.50	59.9	28.40	65.3
2030	24.10	66.0	24.90	68.7	25.80	71.6	28.30	79.8
2035	22.00	74.4	23.00	78.1	24.10	82.1	27.00	93.3
2040	18.70	80.1	19.70	84.9	20.80	90.1	24.00	104.6
2045	15.80	82.2	16.90	88.2	18.10	94.8	21.40	113.1
2050	13.70	81.3	14.90	88.7	16.20	96.8	19.70	119.4
2055	12.10	77.8	13.40	86.8	14.80	96.8	18.80	124.3
2060	10.30	71.9	11.80	82.8	13.40	94.8	17.90	128.1
2065	8.50	63.3	10.20	76.5	12.00	91.0	17.00	131.2
2070	6.90	52.5	8.80	68.3	10.90	85.8	16.80	134.1
2075	5.30	39.9	7.60	58.7	10.10	79.5	17.00	136.9
2080	3.50	25.5	6.20	47.5	9.10	71.9	17.10	139.2
2083	2.30	15.7	5.20	39.9	8.30	66.7	17.00	140.5

* (적립기금) 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

참고3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단위 : 천명, %)

	수급자 수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13	1,782	13	220	29.0	0.2	3.6
2014	1,929	15	254	30.2	0.2	4.0
2015	2,056	17	291	31.0	0.3	4.4
2020	2,764	28	519	34.2	0.3	6.4
2025	3,803	42	805	36.8	0.4	7.8
2030	5,194	55	1,118	40.9	0.4	8.8
2035	6,973	62	1,428	47.3	0.4	9.7
2040	8,972	65	1,709	54.4	0.4	10.4
2045	10,766	62	1,949	61.6	0.4	11.2
2050	12,310	57	2,130	68.4	0.3	11.8
2055	13,171	51	2,216	74.4	0.3	12.5
2060	13,857	45	2,185	78.6	0.3	12.4
2065	14,022	39	2,084	80.6	0.2	12.0
2070	13,542	34	1,953	82.5	0.2	11.9
2075	12,846	30	1,810	83.9	0.2	11.8
2080	12,193	26	1,666	84.9	0.2	11.6
2083	11,833	24	1,579	85.4	0.2	11.4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F A Q

2013. 3

◆ 동 자료는 보도일시(3.29일 조간) 이후 대외 공개되는 자료이며,
보도일시 이전까지는 비공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

1. 총론 23

- 1-1.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는 이유는? 23
- 1-2. 장기추계는 매우 불확실한데, 추계기간을 70년으로 하는 이유는? 24
- 1-3. 제3차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결과는? 25
- 1-4. 2060년에 기금이 없어진 이후에는 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26
- 1-5. 제3차 재정계산 결과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는가? 28
- 1-6. 제2차 재정계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29
- 1-7.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전망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31
- 1-8. 재정추계 결과 발표 이후의 일정은? 32
- 1-9. 재정안정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는가? 33

2. 인구 변수 34

- 2-1. 새로운 통계청 인구전망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친 효과는? .. 34

3. 거시경제변수 36

- 3-1. 거시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였는가? 36

4. 모형 37

- 4-1.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방법은? 37

5. 기타 가정 및 추계결과 38

- 5-1. 기금투자수익률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38
- 5-2.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추이는? 39

6. 제도 운영 40

- 6-1. 향후 적립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 아닌가? 40
- 6-2. 부과방식으로 당장 전환하지 않고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41
- 6-3. 해외사례와 비교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42
- 6-4.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수준은? 43
- 6-5.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연금급여지출 수준은? 43

1 총론

1-1.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는 이유는?

- 1998년 국민연금 개혁 시 도입
 -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를 도입
 - * 국민연금법(제4조제2항)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
-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건강 점검'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 및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5년)으로 점검** 하고 평가하여 필요시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해외 공적연금들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 재정건전성 평가

< 국가별 재정계산의 역할과 재정목표 및 주기 >

	재정계산의 역할	재정방식과 재정목표			주기
		재정방식 ²⁾	재정목표	부담과 급여	
독일	· 장·단기 재정점검 · 재정조정	부과방식	· 연간 수지균형	· 보험료율상한설정 · 급여수준하한설정	1년
영국 ¹⁾	· 장기재정점검	부과방식	· 연간 수지균형		5년
미국	· 장·단기 재정점검	부과방식	· 10년간 수지균형		1년
일본	· 장기재정점검	부과방식	· 100년간 수지균형	· 보험료율 고정 · 급여수준하한설정	5년
캐나다	· 장기 재정점검	부분적립	· 일정 적립배율 유지	· 보험료율 고정	3년

주: 1) 재정계산은 5년마다 실시되지만, 보험료율 및 급여조정을 등 행정명령을 포함한 제도조정은 매년 별도의 재정상태 평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짐
2) 기금의 규모, 수지균형에 대한 목표를 기준으로 분류

1-2. 장기추계는 매우 불확실한데, 추계기간을 70년으로 하는 이유는?

- 국민연금(공적연금)은 한 사람의 인생(18세~사망)에 걸쳐 적용되는 초장기 제도로써, 적어도 제도가 한 세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
 - 한 사람이 청·장년(18~60세) 시기에는 '가입자'가 되고, 노년(61세 이상)에는 '수급자'로서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부담·급여의 주체(청장년 vs 노인)가 명확히 구분되고, 부담·급여의 구조가 장기적으로 이연되는 구조
 - 즉 오늘의 부담 주체가 내일의 수혜자가 되고, 내일의 부담 주체가 모래의 수혜자가 되는 형식
 - 이에 장기추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 가입자의 인생주기,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60년 이상의 긴 추계 기간이 필요함
- 외국의 경우에도 장기재정추계기간은 대부분 60~100년으로 설정
 - 미국(OASDI)과 캐나다(CPP), 스웨덴(AP)은 75년, 일본(GPIF)은 100년, 영국(NIF)은 60년으로,
 - 국민연금의 추계기간 70년은 평균적인 수준
 - 캐나다(CPP), 일본(GPIF), 독일 등은 추계기간을 명문화하고 있음
 - * 일본은 약100년, 캐나다는 75년, 독일은 15년간의 재정분석이 필요함을 명문화
 - 장기추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단기 재정추계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국가도 있음

1-3. 제3차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결과는?

- (추계 기간) 향후 70년 (2013~2083년)
 - 제도의 성숙 및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하여 7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제2차 재정계산의 추계기간(2008~2078)과 동일
- (추계 결과) 보험료율, 급여수준 등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기 재정 전망 실시
 - 2043년까지는 적립기금이 계속 증가(최대 적립금 2,561조원)
 -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됨
 - * 제2차 재정계산과 수지적자발생시점(2044) 및 적립금 보유기간(2060)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조금 커짐

<재정전망결과>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적립금 보유기간
제3차	2043년(2,561조원, 2010년 불변가액 1,084조원)	2044년	2060년(△281조원)
제2차	“(2,465조원, 2005년 불변가액 1,056조원)	“	“(△214조원)

- * 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 수익) < 총지출(연금급여 지출 등)이 되는 시점
-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2013년 1%)

1-4. 2060년에 기금이 없어진 이후에는 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 우선 기금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문제없이 연금급여 지급
 - 일반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없거나, 약간의 완충기금(buffer fund)만 보유한 '부과방식'으로 재정 운영
 -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금은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
 -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제도 운영 초기 급여지출 대비 상당 수준의 적립기금 보유

* 적립배율 : 연초 적립금을 그 해의 급여액으로 나눈 비율

- * (스웨덴) 1960년 도입된 ATP의 초기 적립배율은 130배 수준(부분적립)
- * (캐나다) 제도초기 적립배율은 1966년 52.5배 → 1985년 5.7배
- * (일본) 1965년 29.2배 → 1985년 7.3배
- * (우리나라) 2012년 35.9배 → 2030년(보험료 수지적자) 18.4배 → 2043년(기금최대) 9.4배
- 이후 적립기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게 됨
- 선진국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의 감소·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음
-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이며,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재정)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됨
 - 기금이 소진이 곧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중단 내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님

□ 2012년말 현재 국민연금이 적립기금 391.9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

*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사이에 존재하는 재정방식으로 제도 시행 **역사가 짧아 기금이 적립된 경우와 재정안정화 개혁을 통해 적립금을 보유하게 된 1990년대의 선진국의 경우**

- 공적연금 제도 도입 초기로 아직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큰 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의 적립기금 보유 여부 및 그 규모가 급여의 지불 능력, 지불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장기 재정방식 등 일정시점 이후의 장기운영방향을 결정하게 됨**

- 사회적 합의의 결과에 따라 **운영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 **건강보험과 같이 원칙적으로 매년 필요한 연금 급여만큼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될 수도 있고(부과방식으로 전환),**
 - **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는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음(부분적립 방식 유지)**
- 선진국 공적연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적립배율 3~5배 단계에서 제도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변화를 모색
-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이른 시기에 재정안정화 개혁을 2차례 실시한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
-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재정목표 등 **사회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장기운영방향은 미확립**
 - 앞으로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임**

1-5. 제3차 재정계산 결과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는가?

□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지난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이후 달라진 여건들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 인구구조는 **2011년 통계청의 장기인구전망**을 반영
- **경제변수**는 현 시점에서 지난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화와 선진국의 발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예측

* 거시경제변수는 KDI 등이 마련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통일된 기준** 사용

- 가입율, 지역가입자 비율, 징수율 등 **제도변수들은 지난 5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재설정**

- **추계모형은 지난 5년간의 제도 변화(공적연금연계 등)를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한 모형 개선을 반영**

☞ 모든 내용은 **인구·거시경제·노동·보험계리·사회복지(연금 제도)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검토

□ **재정추계위원회는 2012년 6월에** 구성되었으며, **2013년 2월까지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확정**

1-6. 제2차 재정계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재정수지 전망

- 제2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였을 때 수지적자(2044) 및 적립기금 보유기간(2060)은 동일하지만 기금규모의 변동폭은 더욱 커짐

<재정전망결과>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적립금 보유기간
제3차	2043년(2,561조원, 2010년 불변가액 1,084조원)	2044년	2060년(△281조원)
제2차	“(2,465조원, 2005년 불변가액 1,056조원)	“	“(△214조원)

□ 가정 분석

- 적립기금 보유기간 등은 동일하지만, 재정수지 전망이 도출되기까지의 인구·경제·제도변수 및 추계모형은 제2차 재정계산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출산율 상승, 가입율 제고 등으로 인해 총수입이 증가하였고, 기대여명 상승, 모형개선 등의 효과로 총지출도 증가
 - 이에 따라 2043년까지는 총수입 증가 효과로 기금규모가 더욱 커지며, 2043년 이후에는 총지출 증가 효과로 기금규모가 더욱 급속하게 감소

- 기대여명의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 출산율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

* 제2차 재정계산 당시 중장기 가입률 가정을 82.8%로 고정시켰으나, '11년 실제 가입률은 87.4%에 달하여,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15년 이후 가입률을 90.0%로 가정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상승>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83	
3차 재정계산	합계출산율(명)	1.23	1.35	1.41	1.42				
	기대수명 (세)	남	77.20	79.31	81.44	83.42	85.09	86.59	88.12
		여	84.07	85.67	86.98	88.21	89.28	90.30	92.00
2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합계출산율(명)	1.15	1.20	1.28					
	기대수명 (세)	남	76.1	78.0	79.8	81.4	82.9		
		여	82.9	84.7	86.3	87.7	88.9		

< 국민연금 가입률의 증가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년 이후
제3차 재정계산	-	-	-	-	88.5%	89.2%	89.8%	90.0%
실제 가입률	84.2	85.0	86.0	87.4	-	-	-	-
제2차 재정계산	82.8%							

1-7.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전망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재정추계는 방법론 및 주요가정 설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2년 6월에 「2010~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 발표
 - NABO는동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을 2041년에 국민연금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는 NABO의 전망과 비교하여, 수지적자는 3년, 적립기금 보유기간은 7년 가량 차이

<제3차 재정계산 vs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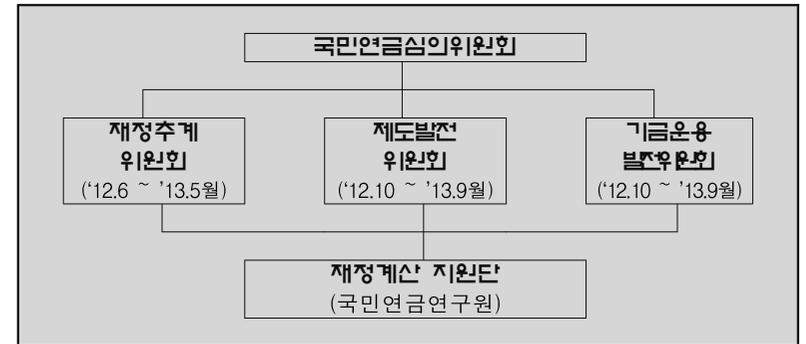
	수지적자 발생	최대 적립기금	적립금 보유기간
제3차 재정계산	2044년	2,561조원(2043년)	2060년
국회예산정책처	2041년	1,582조원(2040년)	2053년

- 제3차 재정계산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주로 모형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 등의 차이에 기인함
 - 제3차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해 개발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을 사용하였으나,
 - 예산정책처는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범용 모형인 PROST를 변형하여 사용함
 -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미래 경제여건을 훨씬 비관적으로 전망함

1-8. 재정추계 결과 발표 이후의 일정은?

- 금번에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됨
 - 재정안정화, 사각지대 해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장기 기금운용방향 등이 주요 논의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도>



- 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012년 10월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 각각의 위원회에서 제도 및 기금운용 관련 장기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됨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9월말까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시 국민들이 논의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보고서도 함께 만들어 배포할 계획임

1-9. 재정안정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는가?

- 3차 재정계산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3개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
- 재정계산의 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며,
 -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됨('13.10)
 - 장기 재정안정화와 관련된 조치는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임

2

인구 변수

2-1. 새로운 통계청 인구전망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친 효과는?

-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제공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를 적용함 (~2060년)
 - 2060년 이후 사망률의 경우,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조정(2100년 남자 90.9세, 여자 93.2세)
 - * 제2차 재정계산 시 20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적용
- 제2차 재정계산 전망에 비해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이 모두 상승

<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상승 >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	2100	
3차 재정계산	합계출산율(명)	1.23	1.35	1.41	1.42					
	기대수명 (세)	남	77.20	79.31	81.44	83.42	85.09	86.59	88.12	
		여	84.07	85.67	86.98	88.21	89.28	90.30	92.00	
2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합계출산율(명)	1.15	1.20	1.28						
	기대수명 (세)	남	76.1	78.0	79.8	81.4	82.9			
		여	82.9	84.7	86.3	87.7	88.9			

- 출산율과 기대여명이 상승할 경우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여 재정에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모두 포함
 - 출산율이 증가하면 초기에는 가입자가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연금을 수급하게 될 65세 이후에는 수급자가 되어 연금 지출이 증가함
 - 다만, 재정추계기간 동안은 가입자 증가의 효과가 더 큼

-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늘어나므로 연금 지출이 증가함
-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출산을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새로운 인구 전망이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거시경제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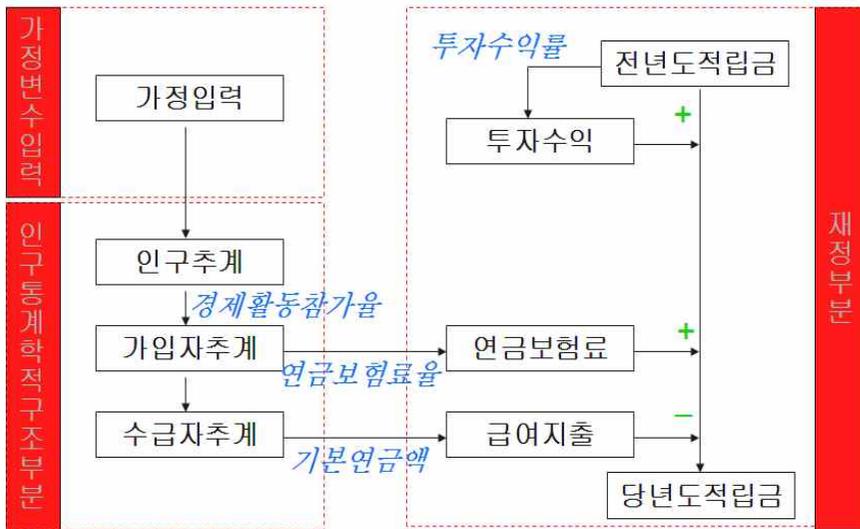
3-1. 거시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였는가?

- 제1·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거시경제 전망 실시
-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회가 제공한 거시경제 전망을 재정추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활용
- 2011년말에 국가 주요 재정분야의 일관적인 장기재정전망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을 포함한 주요 공적 보험 등 향후 재정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재정분야의 일관성 있는 재정추계를 위하여 공통변수 제공 및 추계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협의회 내 재정분야에서는 인구전망변수, 거시경제 전망변수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

4 모형

4-1.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방법은?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가정변수를 입력하여 가입자와 수급자를 추계한 후, 전년도 적립금에서 수입과 지출을 더하고 빼 매 해의 적립금을 계산하는 수리적 모형을 사용함
- 가입자, 수급자 추계를 위해서는 인구추계 결과가 필요하며,
- 보험료 수입과, 투자수익 등 수입과 급여 등 지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전망이 필요



- 해당 모형은 국민연금 재정추계만을 위한 국민연금연구원 자체개발 모형으로, 매 재정계산 시마다 실적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 중

*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공적연금 범용모형인 PROST 추계방식 사용

5 기타 가정 및 추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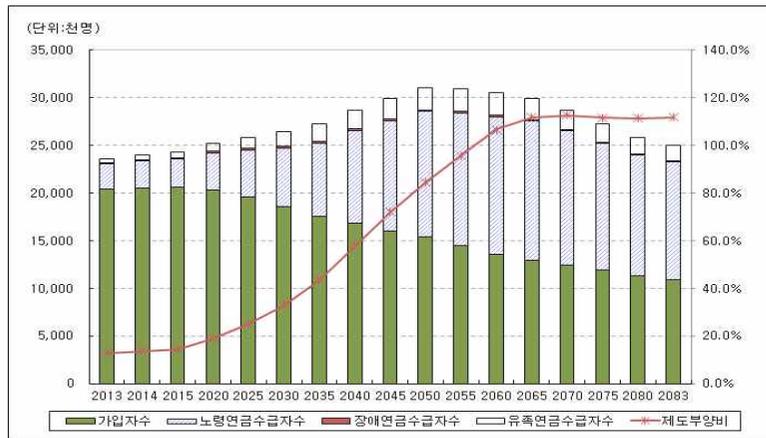
5-1. 기금투자수익률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 제3차 재정계산에서 기금운용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1.1배로 설정
-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다양한 기금투자수익률 도출방안을 검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선택
- 이는 제2차 재정계산 시와 동일한 가정으로,
- 2006~2011년의 실적치와 비교 결과, 평균적으로 실제 기금운용 수익률은 회사채 이자율의 1.12배로 제2차 재정계산의 가정과 유사하였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	실현수익률	5.77%	6.79%	-0.18%	10.39%	10.37%	1.99%	5.86%
	실현배율 (수익/회사채)	1.12	1.19	-0.03	1.79	2.23	0.45	1.12

5-2.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추이는?

-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
 -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
-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78.6% 수준
 -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 수급
-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



6

제도 운영

6-1. 향후 적립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 아닌가?

- 적립기금은 '12년말 현재 391.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 최고 수준(2,561조원, GDP 대비 44.2%)에 도달한 후 감소하여 2060년에 소진 예정
 - 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은 2012년 말 31.6%이며, 2035년 49.4%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기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거나, 단기간 내에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구구조 개선과 함께 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 국민연금(NPS)은 선진국과 달리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제도 초기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
 -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빨라 연금 재정상태가 큰 폭으로 변화

<주요국가의 고령화 진행속도>

	도달연도			소요기간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20%
한국	2000	2017	2026	26년
일본	1970	1994	2006	36년
프랑스	1864	1979	2018	154년
미국	1942	2015	2036	94년

- 국민연금이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후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국민연금이 처한 환경 속에서 미래 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

○ 거대 기금의 문제는 운용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운용상 문제를 이유로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급속한 부과방식의 제도 개혁, 기금의 급여지출 목적 외 사용은 신중해야 함

* 해외사례와 같이 국내시장 투자 제약 설정(스웨덴 AP), 해외투자 확대(노르웨이 GPF-G) 등 거대 기금 운용방안 마련

○ 또한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유사하거나, 보다 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음

< GDP대비 연금규모 (2011년말 기준) >

연금종류	GDP 대비 비중	연금종류	GDP 대비 비중
국민연금	28.2%	스웨덴 AP	36.3%
캐나다 CPPIB	12.1%	네덜란드 ABP	40.9%
일본 GPIF	24.3%	노르웨이 GPF-G	121.7%

* 일본과 스웨덴은 익년 3월 결산이나 2011년말 기준으로 작성

6-2. 부과방식으로 당장 전환하지 않고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 국민연금은 기금이 없어도 국가가 세금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국민연금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세대 간의 형평성, 즉 미래세대로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함임

○ 기금 없이, 매년 조세로 운영한다면, 현 납세자는 3%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2045년, 2065년의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각각 본인소득의 15.5%, 22.5%를 내야함

○ 특히 부과방식의 경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국가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

○ 즉 국가가 국민연금기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 자손들의 급격한 부양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6-3. 해외사례와 비교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 기금운용수익률은 '8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6.69%의 수익률을 달성하였고,

○ 지난 10년간('02~'11) 해외연기금과 실적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낮은 위험 하에 높은 수익의 운용성과를 거두었음

구분	국민연금	GPIF(일)	ABP(네)	CalPERS(미)	CPPIB(캐)
수익률(%)	6.6	1.9	5.2	5.1	6.2
위험(표준편차)	3.5	7.3	11.8	14.8	11.0

< 연도별 운용성과 비교 >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해당기간 수익률, 조원)

구분	자산규모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5년 평균	3년 평균
국민연금	349	6.98%	△0.21%	10.84%	10.57%	2.3%	6.0%	7.8%
GPIF(일)	1,615	0.35%	△13.9%	6.71%	0.21%	-2.8%	-2.1%	1.3%
ABP(네)	368	3.8%	△20.2%	20.2%	13.5%	3.3%	-3.1%	12.1%
노르웨이	649	4.3%	△23.3%	25.5%	9.6%	-1.4%	1.6%	10.7%
CalPERS(미)	261	10.2%	△27.1%	11.8%	12.5%	1.1%	0.4%	8.3%
CPPIB(캐)	173	10.1%	△14.5%	5.64%	9.16%	5.6%	2.8%	6.8%

* 출처 : 각 기금의 Annual Report 및 보도자료

주 1) 해외연기금과 비교를 위하여 국민연금은 금융부분 시간가중수익률 사용

2) CPPIB, GPIF는 3월결산이나 연도별 기준으로 재계산

3) '11년말 환율 적용 (원/US\$:1159.00, 원/100엔:1493.17, 원/유로:1497.20, 원/CAD\$:1135.27, 원/kr:195.93)

6-4.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수준은?

-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의 평균은 19.6%으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연금보험료율				
	1994	1999	2004	2007	2009
한국	6.0	9.0	9.0	9.0	9.0
캐나다	5.2	7.0	9.9	9.9	9.9
핀란드	18.6	21.5	21.4	20.9	21.6
프랑스	21.5	16.7	16.7	16.7	16.7
독일	19.2	19.7	19.5	19.9	19.9
일본	16.5	17.4	13.9	14.6	15.4
네덜란드	17.9	17.9	17.9	17.9	17.9
스페인	29.3	28.3	28.3	28.3	28.3
스웨덴	19.1	15.1	18.9	18.9	18.9
스위스	9.8	9.8	9.8	9.8	9.8
터키	20.0	20.0	20.0	20.0	20.0
미국	12.4	12.4	12.4	12.4	12.4
OECD 평균	19.2	19.3	20.0	19.8	19.6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1)

6-5.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연금급여지출 수준은?

- 2013년 GDP 대비 연금급여지출의 비중은 1.0%이며, 점차 증가하여 2070년 이후로는 8% 내외에서 유지됨
-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평균 급여지출 비율은 GDP 대비 7.8%(2009년)로 현재 우리나라의 급여지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연금 급여지출 비율 0.8% (2012년 기준)

< GDP 대비 급여지출 비중(2009년) >

구분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OECD 평균
연금급여/GDP	6.8%	4.5%	13.7%	8.2%	11.2%	10.2%	7.8%

자료: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 장기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40%의 급여수준은 OECD 평균수준이며 일본,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2011)임

* '08년 60-50%로 조정, '09년부터 매년 0.5%p 감액하여 '28년 40%로 조정

국가	OECD 평균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소득대비 연금급여수준	42.1%	42%	39.4%	38.9%	34.5%	31.9%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1)